

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

의안번호	제327호
의결년월일	97. 11. 1. (제56회)

제안년월일: 97. 11. 8.

제안자: 환경복지위원장

제5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(1997. 11. 8.)에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

감사대상기관	성격 및 근거	감사사유
• 장애인종합복지회관 • 해립원 • 사회복지관(6개소) • 노인복지회관(2개소) • 성가요양원 • 새소망 소년외집 • 시립어린이집(12개소)	•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•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4호	• 예산 운영의 효율성 집행 여부 •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성과 여부